

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철규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, 사단법인인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전환함(안 제17조 및 제18조2항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이 은 정)